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59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4. 29.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“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”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제3장에 “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”을 신설함

- (1)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정함(안 제29조)
- (2)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그 업무를 정함(안 제30조)
- (3)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의 분장 사무를 정함(안 제31조)

나. 기타

- (1)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함
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

다. 관계부서협의 : 협의 완료

라. 입법예고 : 2009. 4. 3 ~ 4. 23까지, 의견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6조로 하고, 제3장에 제8절(제29조부터 제31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

제29조(설치) ① 법 제32조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명학생교육원(이하 “청명학생교육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번지에 둔다.

제30조(원장)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1조(업무) 청명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掌한다.

1.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과장”을 “행정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과장”을 “행정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	제 3 장 직속기관
<신 설>	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
	<p><u>제29조(설치) ① 법 제 32조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이하 "청명학생교육원"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.</u></p> <p><u>②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4지에 둔다.</u></p> <p><u>제30조(원장)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u></p> <p><u>제31조(업무) 청명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 <u>2.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</u>

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	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
<u>제29조</u> (생 략)	<u>제32조</u> (현행 제29조와 같음)
<u>제30조</u> (생 략)	<u>제33조</u> (현행 제30조와 같음)
<u>제31조</u> (생 략)	<u>제34조</u> (현행 제31조와 같음)
<u>제32조</u> (생 략)	<u>제35조</u> (현행 제32조와 같음)
<u>제33조</u> (생 략)	<u>제36조</u> (현행 제33조와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8852호, 2008.2.29)

제32조 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1375호, 2009.3.27)

제31조 (학생의 징계 등)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학교내의 봉사
2. 사회봉사
3. 특별교육이수
4. 퇴학처분

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 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·운영하고, 이에 따른 교 원 및 시설·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4조 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 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.

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